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 ■ 신청자정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lt;개정 2019. 10. 29.&gt;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자 등본상 주소	전화번호 (유선)	계약자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급유형	일반공급 신청자 [ √ ]	특별공급 신청자		
		청년 [ √ ]	신혼부부 [ √ ]	
신청내역	주택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외(7호선 신풍역 2번 출구)	전용면적(m)	타입	
	주택유형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 아파트 [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오피스텔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 18호의 6 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 18호의 7 서식에 따른 월 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증빙서류 (별표 1 제 1호 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1 제1호 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상기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이 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 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0.5.27>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계약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약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계약자 연락처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서약 내용	일반공급 신청자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자임
	특별공급 신청자	청년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신혼부부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2.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 신청이 위 작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2.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게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활용(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항 목
정보안내	신규공급 안내, 임대조건, 청약가이드, 청약, 계약 안내 등
청 약	일반·특별공급 신청 접수, 당첨자 선정, 당첨자 안내 등
계 약	납부대금 안내, 계약 안내(전화, 문자, 우편 등), 임대관리
통계분석	설문 조사, 인구 통계 분석 등

## ■ 수집·이용할 정보

\*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주택소유정보 등 청약 신청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부가 정보

- 정보안내, 행사, 분석목적 수집 정보 : 성별, 이메일, 희망주택형, 소유주택, 청약정보 등

- 공급계약 관련정보 : 호수,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대금 입금내역(입금일, 입금액) 등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폐기

- 주택공급 관련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관기간(당첨자 5년, 낙첨자 6개월)

- 마케팅 및 이벤트 관련 자료: 1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 통보 및 관리 등에 관련한 업무 수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본 주택공급사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 사업주체 / 위탁사 / 시공사 / 분양대행사 :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 / 지에이치파트너스(주) / 주식회사 동원개발 / (주)씨엘메이슨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청약자격 검증, 공급계약의 체결, 계약내용의 이행, 세금납부, 프로모션 혜택 제공 대상 여부확인, 임대관리업무,고객정보 시스템 운영, 자산관리 업무, 시설관리, 하자관리, 주차장관리 등
제공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개인 기초 정보 :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공급계약 관련 정보 : 동·호수,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대금 입금내역(입금일, 입금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일반·특별공급 신청,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일반·특별공급 신청 및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b>
고유식별정보의 동의 여부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b>

## ■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대표번호 02-6223-2005 으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 정정 /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전문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분양관리 대행 : (주)씨엘메이슨

※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체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업체 명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지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  (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임차인)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가.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차인 상담 및 자격 확인, 임대차 계약관리 등 집 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업무

■ 수집 · 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주택소유 정보, 건강(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보유,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폐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사업 폐지일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자료 활용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업무를 재위탁받은 금융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임대차 계약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단, 주민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해 제공한다), 기금융자 및 임대차 계약 관리와 관련하여 수집 · 이용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수립,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동의하지않음 [ <input type="checkbox"/> ] )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동의하지않음 [ <input type="checkbox"/> ] )

2024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기준)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평균 소득현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신설 2018.07.17>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계약자 성명	
	주소	계약자 등본상 주소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계약자 연락처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특별공급 유형	청년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가구총계	총 가구의 전년도 합산 연소득 / 월소득    원	
	세대주 성명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주의 월소득    원
	세대원 성명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의 월소득    원
	세대원 성명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세대원 성명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계약자 생년월일
	주소	계약자 등본상 주소		

##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보유자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현금자산	예 <input type="checkbox"/>		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보증금 (세입자작성)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주식/증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부채	현금부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 기타 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현금자산 : 예금잔액증명서

나. 임차(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다. 주식/증권 : 계좌잔고증명서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금 납부영수증, 출자지분 보유내역서 등

마. 분양권 : 계약서 사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24년 월 일

귀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 <개정 2019. 10. 29.>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민간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앞면)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계약자 성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자 등본상 주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sup>2)</sup> (서명 또는 인)
	계약자 성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성명	계약자 성명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성명	세대원 성명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성명	세대원 성명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성명	세대원 성명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지원

2024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신청자	계약자 성명
-----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본인	계약자 성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부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성명
	모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년자만 기재			-	
			-	

본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 취소 또는 임대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청년안심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신풍역 비스타동원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관계	비고
본인	계약자 성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예시)본인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예시)배우자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2024년  월  일

신청자 1 대표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자 2 예비 배우자 :  (서명 또는 인)